

# 「포용적 금융 대전환」 추진방향

2026. 1.

금 융 위 원 회

# 목 차

I. 추진배경 .....	1
II.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여건 분석 .....	2
III.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 .....	4
IV. 포용적 금융 추진방향 .....	5
V. 추진체계 .....	14
VI. 기대효과 .....	15
VII. 추진계획 .....	17

## I. 추진 배경

- 코로나19 시기를 지나오며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여건이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부채부담 가중\*

\* 저신용자(신용 하위 20%) 연체율<sup>은행</sup> :('20)10.0 ('21)8.68 ('22)9.5 ('23)12.1 ('24)14.7

- 그간 정부는 자금지원<sup>1)</sup>, 채무조정<sup>2)</sup>으로 대응해 왔으나, 서민의 고금리 부담과 제도권 금융 접근성 제약 등 문제는 여전

\* 1)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공급규모 확대 및 대출한도 상향, 햇살론유스 이차보전 등  
2)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개인사업자 등), 신용회복위원회 선제적 채무조정 강화

- 2금융권의 중저신용자에 대한 신용대출은 신용위험 대비 금리가 높아 금리단층\*이 발생하고 공급량도 불충분

\* (은행) 6~7% vs (저축·캐피탈) 14~15% → 7~8%p의 금리 격차 존재

- 민간서민금융 보완목적의 정책서민금융은 재원이 한정적이고 금리 수준이 높아 서민 자금애로 해소에 역부족이라는 지적

- 장기재원 확보 없이 정부예산과 민간의 출연금을 천수답식\*으로 받아온 결과, 재원 안정성이 떨어지고 충분한 서민금융 공급이 제약

\* (민간) 서민금융법상 금융회사 출연규정의 적용기간이 '26.10월에 종료(5년 한시법) (정부) 일반회계와 복권기금은 단년도로 편성되어 재원의 장기적 안정성 미흡

- 일부 상품\*은 한정된 보증재원, 민간시장 구축 방지\*\*등을 감안하여 상대적 고금리(연 15.9%)를 설정 ('25년말 기준)

\*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불법사금융예방대출

\*\* 햇살론15 출시 검토시, 저축은행 사잇돌대출 등 중금리 대출 평균 13%대와 대부업 등 19%대 사이에 위치하도록 설정

- 충분하지 못한 서민금융은 금융소외 문제를 초래하여 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파급

-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될 경우 불법사금융 노출과 과도한 추심을 유발하고 이는 생산가능 인력의 노동시장 이탈을 유발

➔ 금융의 포용성 제고를 통해 서민·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에서 “보다 낮은 비용”으로, “원활하게”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 필요

## Ⅱ.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여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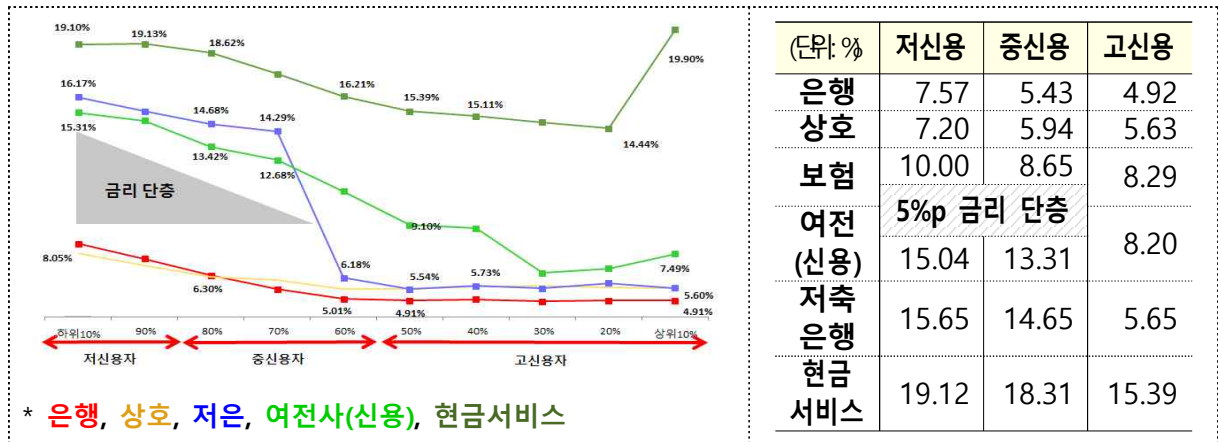
### 민간서민금융 저소득·저신용자의 자금애로가 가중되는 모습

#### ① 금리단층 현상에 따른 서민·취약계층의 고금리 부담 지속

- 저축은행·여전(신용)업권의 경우 중신용자 구간부터 급격한 금리격차\* 발생 ➡ 중저신용자는 신용위험 대비 고금리 부담

\* 2금융권은 은행권 대비 신용평가 역량이 부족하고, 금리보다 대출가능 여부가 중요한 중저신용 차주의 성향이 반영되어 높은 금리가 산출되었을 가능성

< 신용평점 구간별, 업권별 신용대출 금리 ('25.8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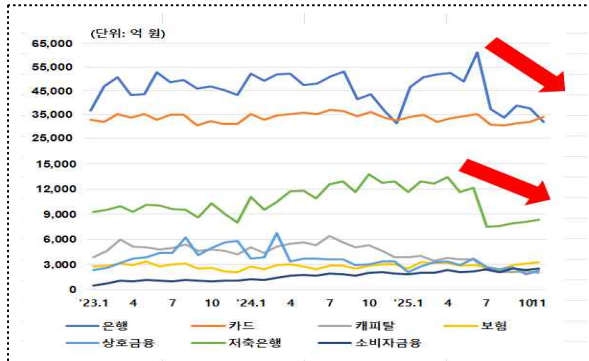
#### ② 저신용, 서민층의 민간금융 이용 제약 심화

- '25년 하반기에 주요 업권(은행 등)에서 신규 신용대출이 감소하였고,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제2금융권 중심(저축 등)으로 하락세 뚜렷

- 경기회복 지연 등에 따른 제2금융권의 대출 축소 지속시 제도권 금융 경계에 있는 저신용자 대출 접근성이 악화\*될 우려

\* 민간서민금융은 경기순응적인 특성이 있어 경기 침체시 연체율 상승, 수익성 악화 등으로 인해 오히려 공급이 감소하는 경향

< 신규 신용대출 추이 >



< 업권별 신용대출 보유차주 비중 ('25.10월) >

업권	900점대	800점대	700점대	600점대 이하
은행	53.5%	29.0%	10.2%	7.4%
카드	4.4%	36.2%	37.1%	22.3%
캐피탈	0.1%	16.2%	44.9%	38.8%
보험	5.5%	42.9%	31.3%	20.3%
상호금융	45.6%	35.5%	9.9%	9.0%
저축은행	0.0%	13.9%	49.9%	36.1%
소비자금융	0.0%	10.8%	25.2%	64.0%
정책서민금융	6.9%	25.4%	35.8%	31.9%

**정책서민금융** 금융소외자에 대한 정책서민금융의 포용 필요성 증대

① 경기회복 지연으로 인한 금융회사 저신용자 대출 축소는 **정책서민금융 수요 급증\***을 초래하고 정책서민금융 거절 사례 유발

\* 햇살론15 거절률(%) : ('21)1.4 → ('22)4.8 → ('23)3.0 → ('24)7.1 → ('25)7.7

② 일부 상품들은 **상대적으로 고금리**(年 15.9%)를 부과하여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비용 경감이라는 정책 취지가 퇴색된다는 우려 제기

< 정책서민금융상품 금리 현황('25년말 기준) >

구분	보증부 대출						무보증 신용대출	
	햇살론					최저신용자 특례	새희망 홀씨	불법사금융 예방
	뱅크	유스	근로자	15	카드			
취급기관	은행	은행	저축 상호 보험	은행	카드	은행, 저축	은행	서금원
금리(%)	평균 10	5.0	14 이내 (평균 10.2)	15.9	-	15.9	10.5 이내	15.9

③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성실히 상환한 차주도 더딘 신용등급 상승과 금융회사와의 연계 부족 등으로 **제도권 금융 복귀가 여의치 않은 상황\***

\* 보증부 정책서민금융상품(6개) 2회 이상 이용률(%) : 약 34.8%('25년말 기준)

**채무상환능력** 상환능력 저하로 연체 및 채무조정 수요 증가

① (취약층) 잠재 취약층인 **다중채무자**는 꾸준히 증가 추세이며, 90일 이상 **장기연체자**는 '23년부터 증가 전환

② (채무조정) 과도한 부채 등으로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 **채무조정** 및 법원 **개인회생·파산** 신청 건수 증가 추세

③ (불법사금융) 제도권 금융에서 탈락된 **금융 취약계층 피해 증가**

< 연체자, 다중채무자수 추이 >

(만명)	'21년	'22년	'23년	'24년	'25.9
단기연체자(5~89일)	19.9	25.3	30.6	31.1	26.4
장기연체자(90일~)	74.8	73.1	81.3	88.3	93.3
다중채무자수	443.2	451.3	455.7	457.8	458.4

< 채무조정, 불사금 피해신청 >

(만건)	'21년	'22년	'23년	'24년	'25.9
신복위 채무조정	12.7	13.8	18.5	19.5	15.8
개인회생·파산	13.0	13.1	16.2	17.0	14.4
불사금 피해신고	0.9	1.0	1.3	1.5	1.4

### Ⅲ.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

#### 現 상황 평가

-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강화와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따라 서민·취약계층의 고금리 부담, 자금애로 심화
  - 저신용 차주가 성실하게 정책서민금융을 상환하더라도 제도권 금융으로 쉽게 진입하기 어려운 구조적 제약 문제도 여전
- 장기연체자 증가는 과잉추심, 불법사금융 유입 등 부작용을 유발하고 생산구조 이탈에 따른 국가경쟁력 저하 초래
  - ➔ 서민·취약계층의 과중한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연체자의 제도권 경제·금융생활 복귀를 위한 과감한 재기지원 필요

#### 향후 정책방향 : 정부·민간의 연계 강화를 통한 서민 금융배제 문제 해소 추진

- **(금융애로)** 정부의 선도적 역할(시장실패 완화) → 민간의 사회적 책임 이행 → 성실상환자 신용도약 경로 구축(민관 협력)의 **3단계 포용금융체계 확립**
  - ① 우선 정책서민금융 금리구조와 공급체계를 재정비\*하여 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 문턱 완화 및 부담 경감 효과 실현
    - \* 예: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 금리 인하, 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 등
  - ② 정부의 포용금융환경 조성(금리인하·공급확대)를 토대로 민간의 자체재원을 활용한 서민금융공급 확대\* 유도
    - \* 예: 새희망홀씨 등 은행권 저리자금 공급 확대, 사잇돌대출 적격 요건 개편 등
  - ③ 민간(재원 제공)과 정부(제도 설계)가 협력하여 성실 상환시 금리 인하 및 제도권 금융 진입으로 이어지는 단계적·항구적 성장경로 제도화\*
    - \* 예: 금융권 기부금을 활용하여 정책서민금융 성실 상환자에게 금리 인하 및 1금융권 이용 기회를 제공하는 크레딧 빌드업(Credit Build-up) 체계 구축
- **(과도한 채무부담)** 장기연체자에 대한 과감한 채무조정과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추심부담을 완화하여 신속·원활한 재기 유도
- **(불법사금융 피해)** 신속한 제도개선\*을 통해 불법사금융·불법추심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피해 발생시에는 즉시 엄정하게 대처
  - \* 예: 대부업 관리 강화, 렌탈채권 추심 관리 제도화(신종수법 대응) 등

## IV. 포용적 금융 추진방향

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을 살리는 금융」으로 전환  
 < 누구도 금융에서 배제되지 않는 포용적 금융공동체 실현 >

분야	세부 내용
금융접근성 제고와 금융비용 부담 완화	<p><b>정부</b> 정부가 마중물이 되어 서민의 금융부담 경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정책서민금융상품 금리 단계적 인하</li> <li>② 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 및 금융권 서민금융 출연료 인상</li> <li>③ 금융권 기부금을 활용한 금융소외계층 지원 강화</li> </ul> <p><b>민간</b> 민간 금융권의 포용금융 역할 제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은행권 증저신용자 자금공급 확대</li> <li>② 중금리 대출 체계의 양적·질적 개선</li> <li>③ 금융권의 자율적 포용금융노력 확산 유도</li> </ul> <p><b>인프라</b> 민관 협력을 통한 성실상환자 금융사다리 제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크레딧 빌드업 체계를 통한 정책서민금융 졸업 유도</li> <li>② 신용평가 고도화를 통한 ‘숨은 신용점수’ 발굴 및 제도권 연계</li> </ul>
신속한 재기지원	<p>취약계층 채무조정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새도약기금 설치·운영</li> <li>② 새출발기금 제도개선</li> <li>③ 신복위 청산형 채무조정 확대</li> <li>④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채무조정 내실화</li> </ul> <p>연체관리 개선 및 신용회복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매입채권추심업 제도개선</li> <li>② 금융권 개인연체채권 관리 제도·행태 개선</li> <li>③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개선</li> <li>④ 연체 후 성실히 상환한 차주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li> </ul>
금융안전망 강화	<p>불법사금융 신속 차단 및 범죄 유인 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원스톱 종합 전담 지원체계 구축</li> <li>② 불법추심 즉시중단 위한 초동대응 강화 및 불법수단 차단</li> <li>③ 대부업 및 렌탈채권 매입추심업 감독강화</li> </ul>

## 정부 정부가 마중물이 되어 서민의 금융부담 경감

### 1 정책서민금융상품 금리 인하 ※ 기사행 중('26.1월~)

- '26.1월부터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現 15.9%)를 인하(12.5%)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는 추가 금리 인하(9.9%)

\* 기존 정책상품인 햇살론15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이 통합된 상품(지원대상 : 연소득 3,500만원 이하&신용평점 하위20%)

\*\* 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등

### 2 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sup>국정과제</sup> 및 금융권 서민금융 출연료 인상

-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 내에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정기금인 “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27년 출범 목표)

- 금융권 상시출연\* 및 정부 손실보전 근거 마련 등을 통해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고,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탄력적\*\*으로 조정

\* 現 서민금융법상 금융회사 출연근거 일몰('26.10월) 부칙 삭제

\*\* 기금운용계획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0~30% 內 국회 승인 없이 공급 확대 가능  
→ 국가 차원의 경제위기, 재난, 참사 등 발생시 신속하게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 정책서민금융상품 금리 인하와 공급 확대를 위해 우선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금융권 출연요율 상향\* 추진

\* 출연요율 인상 : (현행) 은행 0.06%/비은행 0.03% → (상향) 은행 0.1%/비은행 0.045%

금융권 출연금 : (현행) 年4,348억원(은행2,473억원)

(상향) 年6,321억원(은행3,818억원) → 年+1,973억원(은행+1,345억원)

### ③ 금융권 기부금을 활용한 금융소외계층 지원 강화

#### ① 미소금융 청년상품 도입(미소금융) : 연 3백억원

- 고졸자·미취업자 등 청년의 사회 진입 준비 자금(학원비, 창업 준비금 등)을 지원하는 4.5% 미소금융 청년상품 시범 도입 후 확대 검토(5년간 1,500억원)

- 지원대상 : 사회 진입을 위한 자금이 필요한 미취업 청년(상환능력보다는 상환 가능성 심사 → 햇살론유스 거절자도 대출 가능)
- 금리/한도/만기 : 연 4.5% / 최대 500만원 / 만기 5년

#### ②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미소금융) : 연 1천억원

- 사회적 배려 대상자 및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완제자 등을 지원하는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신설하여 매년 1,000억원 공급(5년간 5,000억원)

- 지원대상 : ①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 ②사회적 배려 대상자 또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완제자 또는 미소금융 성실상환자
- 금리/한도/만기 : 연 4.5% / 최대 500만원 / 만기 5년

#### ③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출 확대(신복위) : 연 4천2백억원

- 신복위가 공급하는 채무조정 성실 이행자 대상 소액대출\* 공급량을 확대하고 지원대상도 추가\*\*

\* 채무조정 6개월 이상 성실상환자 대상 연 3~4% 금리, 최대 1,500만원 대출 지원

\*\* 공급량 확대 : (現) 연 1,200억원 → (26년~) 연 4,200억원(+3,000억원)  
지원대상 추가 : (現) 신복위 채무조정 개인회생 → (개선) 기존 +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 ④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상환부담 경감(서금원) : 연 2천억원

- '26.1월부터 실질금리를 15.9%에서 5~6%대로 대폭 완화\*하고, 전액 상환시 저금리(4.5%) 대출 갈아타기 지원\*\*

\* (기본) 금리 12.5%로 인하 + 전액 상환시 납부이자 50% 페이백 → 실질금리 6.3%  
(사회적 배려 대상자) 금리 9.9%로 인하 + 전액 상환시 납부이자 50% 페이백 → 실질금리 5%

\*\* 미소금융 신설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또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재대출을 4.5%로 지원

## ① 은행권 중저신용자 자금공급 확대

- (새희망홀씨) 은행권 새희망홀씨 공급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운영상황을 보아가며 지원대상 요건, 대출한도 등 개편 검토

\* ('25년) 4.0조원<sup>E</sup> → ('26년) 5.0조원 → ('27년) 5.5조원 → ('28년) 6.0조원

### ▶ 새희망홀씨 대출 개요

- 지원대상 : ①연소득 4천만원 이하 또는 ②개인신용평점 하위 20%이면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 금리·한도 : 연 10.5% 이하, 최대 3천5백만원 이내에서 은행별 자율 결정

- (인터넷전문은행 대출<sup>국정과제</sup>) 중저신용자(신용 하위 50%) 신용대출 신규 취급액 기준 목표비중\* 단계적 상향\*\*

\* 現 인터넷 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목표 : ①중저신용자 신용대출 취급비중 전체 평잔의 30% 이상, ②신규 취급액 기준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취급비중 30% 이상

\*\* 목표비중(신규 취급액 기준) : ('25년)30% → ('26년)32% → ('27년)34% → ('28년)35%

- (평가·관리) 은행 포용금융 실적 종합 평가체계를 도입하여 포용금융 확대 유도(지표: 징검다리론·새희망홀씨, 중기·소상공인 대출 등)
  - 은행의 포용금융 평가결과가 서금원 출연금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출연요율 체계 개편 추진

## ② 중금리 대출 체계의 양적·질적 개선

- (사잇돌대출) 정책서민금융과의 역할분담\* 및 대상별 특화\*\*를 통해 중신용자가 '더 낮은 금리로 더 많이' 대출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중신용자로 적격요건을 특화(現 ~하위50% → 하위 20~50%)하여 보증요율 경감 (하위 20% 저신용자는 정책서민금융을 통해 보다 두텁게 지원)

\*\* 신용리스크로 취급실적이 미미한 개인사업자 전용상품 신설로 금융접근성 개선

- (민간중금리) 규제관련 유인 확대\* 및 인정기준 현실화\*\*를 통해 취급규모를 확대하면서도, 금리 부담 경감 도모

\* 예) 은행권 예대율 산정시 중금리 대출실적 우대, 대출한도 산정시 우대 등

\*\* 현행 금리상한(%) : [은행] 7.44 [상호] 9.56 [카드] 12.33 [캐피탈] 15.50 [저축] 16.51

### 3 금융권의 자율적 포용금융노력 확산 유도

- 민간 금융권의 자율적인 포용금융 사례를 확산하여 서민·취약차주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접근성 제고

#### ▶ 금융지주 「포용금융 활성화 방안」 주요 사례

- (KB) 제2금융권 대한 전용 상품 출시(한도 : 1억원)
- (신한) 배달앱 '땡겨요' 이차보전대출 상품 출시(최대 4% 이차보전, 한도 : 1억원)
- (하나) 햇살론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 시행(최대 2%p 인하 효과)
- (우리) 우리은행 개인신용대출 이용고객 금리 상한 7% 적용
- (NH) 농업인 대상 대출 우대금리 운영(최대 우대폭 : 0.5%p)

## 인프라 민관 협력을 통한 성실상환자 금융사다리 제도화

### 1 크레딧 빌드업(Credit Build-up) 체계를 통한 정책서민금융 졸업 유도

- (연체자 등) ①불법사금융예방대출 → ②미소금융 → ③징검다리론
  - 불사금 예방대출 완제시 미소금융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 갈아타기를 지원하여 금리(6.3%→4.5%<sup>step-down</sup>)·한도(100→500만원<sup>step-up</sup>) 우대
  - 미소금융 완제 또는 성실상환시 은행권 신용대출인 징검다리론<sup>stepping stone</sup>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금융배제계층 크레딧 빌드업 체계 >

구분	개편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미소금융 <sup>신설</sup>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개편 징검다리론(은행)
특징	연체자 등 금융배제계층 지원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완제자 지원	정책서민금융 졸업
금리	연 12.5%(완제시 6.3% <sup>pay-back*</sup> )	연 4.5%	연 9% 내
한도	100만원	500만원	3,000만원

\* 불사금 예방대출 완제시 납부이자의 50%를 환급

○ (햇살론 이용자) ① 햇살론 특례 or 일반보증 → ② 징검다리론

- 햇살론 완제 또는 성실상환시 은행권 신용대출인 징검다리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금리 <sup>step-down</sup>, 한도 <sup>step-up</sup> 우대

< 저소득·저신용층 크레딧 빌드업 체계 >

구분	① 햇살론 특례보증	① 햇살론 일반보증	② 징검다리론
특징	프리랜서 등 소득증빙 불가능	근로자 등 소득증빙 가능	정책서민금융 졸업
금리	연 12.5% <sup>1)</sup>	연 12.5% 내 <sup>2)</sup>	연 9% 내 <sup>2)</sup>
한도	1,000만원	1,500만원	3,000만원

\* 1) 성실상환시 최대 △3.0%p(12.5% → 9.5%)

2) 평균예상금리 : (햇살론 일반보증) 10% 내외 (징검다리론) 7~8% 수준

② 신용평가 고도화를 통한 '숨은 신용점수' 발굴 및 제도권 연계

○ (대안정보 플랫폼) 공공기관 보유 비금융 대안정보\*를 집중하여 금융권에 공급할 수 있는 (가칭)대안정보센터 구축·운영(신정원 내)

\* 예)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 정보, 전기·수도요금 납부 정보 등

○ (신용성장계좌) 찢파일러\*(개인)가 자신의 대안정보를 수집·보관·활용하여 신용도를 체계적으로 성장시키는 신용성장계좌(CB사) 도입

\* 금융거래 이력 등 신용정보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아 CB사가 신용도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사람

▶ 신용성장계좌(ABC: Account for Better Credit) 개요

○ 내용 : 개인의 대안정보가 입·출되는 개인단위 계좌(CB사에 개설): 본인의 대안정보를 CB사에 제공하여 신용평가에 활용하는 것을 동의하고 정보 누적·활용

○ 활용 : 일정기간(예: 6개월) 유지시 중금리 대출우대, 카드 발급요건 완화 등

- (서민특화 CSS) <sup>가칭</sup>“비금융 서민 대안 CB”를 개발\*(서금원)하여 정책상품 대출심사시 활용하고 서민금융회사(저축·여전 등)에도 공유\*\*

\* 예: 대안정보 확대 및 다양화, 정책상품 심사 경험을 반영하여 건전성 입증 등

\*\* 서금원-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금융회사와 전략적 업무 협약을 통해 공동 개발·활용

## 2 | 신속한 재기지원

### 취약계층 채무조정 확대

#### 1] 새도약기금 설치·운영<sup>국정과제</sup> ※ '25.10.1일 출범 후 운영중

- 상환능력을 상실한 장기 연체자 지원을 위해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하여 소각·채무조정

\* 새도약기금 협약 가입률 : 96.8% / 연체채권 매입률 : 47.0% (7.7/16.4조원)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7만명 보유 1.1조원 우선 소각('25.12월)

#### 2] 새출발기금 제도개선<sup>국정과제</sup> ※ 기시행 중('25.9.22~)

-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대상 확대\*, 저소득층·취약계층 지원 강화(원금감면율↑·상환기간 연장) 및 소요기간 단축

\* 지원대상 사업영위 기간 : '20.4월~'24.11월(→'25.6월로 확대)

#### 3] 신복위 청산형 채무조정 확대

- 청산형 채무조정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채무자가 채무부담을 경감하고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

\* 채무조정 대상 채무원금 기준을 완화(1,500만원 이하→5,000만원 이하)

#### 4]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채무조정 내실화<sup>국감 지적사항</sup>

- 금융업권별 채무조정 불승인 사유를 표준화하여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고, 자체 채무조정이 보다 활성화 되도록 유인체계 구축\*

\* ① 업권간 실적 비교가 가능하도록 공시시스템 구축 ② 은행 포용금융 실적 종합 평가체계를 도입하고, 채무조정 실적을 평가지표에 포함 등

## 연체관리 개선 및 신용회복 지원

### 1 매입채권추심업 제도개선

- (등록체계 개편) 은행 등 금융회사 연체채권이 영세 대부업권으로 매각되는 데 따른 추심부담 경감을 위해 금융회사 채권 매입·추심시 허가제 전환\* 및 대부업 겸업 금지

\* 現 등록요건 대비 허가요건 강화(신용정보법상 채권추심회사 수준)

→ 예) 자본금(5억원→30억원), 인력요건(20명), 대주주 적격성 충족, 대부업 겸업 금지 등

※ 대부업체 보유 채권 매입·추심시에는 현행처럼 금융위 '등록' 체계 유지

- (관리·감독) 매입채권추심업자 양수 채권을 전부 신정원에 등록\* 토록 명령(6개월 內), 未이행시 제재조치\*\* 부여하여 이행 확보

\* 금융위 등록대부업자는 양수·양도한 채권정보를 신정원에 등록토록 규정

\*\* (1단계) 채권등록명령 → (2단계) 시정명령 → (3단계) 영업정지·등록취소

### 2 금융권 개인연체채권 관리 제도·행태 개선

- 금융회사 ①채권매각 규제 강화, ②소멸시효 연장 유인 억제 등을 통해 개인 연체자 보호를 대폭 강화

\* ①채권 매각 후에도 원채권자에 고객 보호책임 부여, 채권 매각시 보고·공시의무 부여 등

②연체채권은 시효완성 전제로 손비 인정, 소멸시효 완성채권 매각·추심 금지 등

### 3 금융공공기관 연체채권 관리 개선

- 금융공공기관 보유 개인연체채권의 캠프 일원화 제도\* 관리를 강화\*\*하여 경쟁적 추심 방지 등 원활한 재기 지원

\* '17.3월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6개 금융공공기관(신기보 등)에 부실채권 주기적 매각(캠프)을 권고하였으나 이행실적이 미흡

\*\* 예) 연체채권 상각 및 캠프 매각에 소요되는 기간 단축, 캠프 협약기관 확대 추진 등

### 4 연체 후 성실상환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 기초치('25.9.30)

- 불가피한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국민이 금리, 한도, 신규 대출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체이력정보 삭제

\* '20.1~'25.8월중 5천만원 이하 연체 발생&'25.12월말까지 전액 상환시

## 불법사금융 신속 차단 및 범죄 유인 억제

### 1 원스톱 종합 전담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피해자 보호 강화

- (원스톱 종합 전담 지원) 한 번의 신고로 초동조치, 채무자대리인 선임, 불법추심 수단 차단 등 가능토록 원스톱 종합 전담 지원시스템 구축\*

\* 금감원·경찰 등 신고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담자 배정 → 기관 필요조치 요청  
(☞ 경찰 : 수사, 금감원 : 전화번호 중지요청, 법구공 : 채무자대리 지원, 서금원 : 정책서민금융 등)

- (불법사금융 계좌 차단)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는 자금세탁방지 제도에 따라 고객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즉시 금융거래 중단

\* (절차) ①금감원이 피해자가 제공한 범죄 이용계좌 정보 금융회사 제공, ②금융회사는 고객확인 대상으로 분류 → ③고객확인 전까지 해당 계좌를 통한 (불법)금융거래 중단

### 2 불법추심 즉시 중단을 위한 초동대응 강화 및 불법추심수단 차단

- (초동대응 강화) 불법추심이 즉시 중단되도록 금감원이 불법추심자에게 경고\*하고, 물리적 피해 우려시 경찰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연계

\* 1)채무자대리인 선임 및 법적 대응 예정임을 문자('25.9월 기사행) 및 구두 경고('26.1분기)  
2)금감원장 명의의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 확인서 발급·통지('26.1분기~)하여 대응 등

- (불법수단 차단) 불법추심에 이용된 SNS계정 및 연계 전화번호 차단\*, 동결 대상인 불법추심 관련 계좌 범위 확대\*\* (☞ 대부업법 개정)

\* 금융당국의 SNS계정 연동 전화번호 차단 요청권, SNS계정 정보조회권 신설

\*\* 불법추심 명의인의 타 금융회사·범죄수익 계좌 등 지급정지 근거 마련

### 3 신증수법 대응을 위한 대부업 및 렌탈채권 매입추심업 감독 강화

- (등록대부업 관리강화) 대부업이 불법사금융 통로가 되지 않도록 대부중개플랫폼의 대부광고 규제\*, 대부업 신용정보 등록 강화\*\*

\* 대부광고 內 안심번호 사용 의무화 등(안심번호(\*23#) 사용시 이용자 번호가 未공개)

\*\* 1)금융위 등록대부업자가 신용정보 철저히 등록토록 감독상 명령(☞ 未이행시 시정명령 → 영업정지), 2)신정원에서 대부계약 체결내역 확인不可시 계약 취소권 부여(☞ 대부업법 개정)

- (렌탈채권 추심관리) 렌탈채권 매입추심업을 등록(금융위)토록 하고(☞ 대부업법 개정), 렌탈채권 매입추심 가이드라인 마련(금감원)\*

\* 예: 현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내 시효 완성 렌탈채권의 추심 등 관련 규정 신설 등

## V. 추진체계

### 1 금융위원장 주재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 통해 주요 방안 발표

- 금융권 위주로 참석하던 기존 논의체계에서 벗어나 민간 전문가 및 금융 수요자 중심으로 현장 의견 청취
- 회의 참석자 등은 개별 과제의 특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조정

### 2 개별 과제는 업계전문가 등과 함께 「실무 T/F」를 구성하여 검토

- ①금융접근성 제고와 금융비용 부담 완화, ②신속한 재기지원, ③금융안전망 강화 3개 과제별로 전문가·수요자 등이 다수 참여하는 실무T/F 구성
- 해외사례 발굴 및 벤치마킹을 위한 연구용역도 병행하여 추가 추진과제도 지속 발굴
- 기발표된 과제도 TF를 통해 이행상황을 꼼꼼히 점검

< 포용적 금융 대전환 추진체계 >



# VI. 기대효과

## 1. 금융접근성 제고와 금융비용 부담 완화

### (1) 정책서민금융



1 [공급] '25 91.8만명·6.06조원 → '28 123.3만명·6.79조원

○ (햇살론) '25 65.1만명·5.86조원 → '28 92.3만명·6.46조원 지원

※ [ '25년 계획 ] 65.1만명 × 인당 평균 대출금액 900만원 = 5.86조원  
 ※ [ '28년 계획 ] 92.3만명 × 인당 평균 대출금액 700만원 = 6.46조원

○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연 26.7만명·0.2조원 지원

※ [연간 계획] 26.7만명 × 인당 평균 대출금액 75만원 = 2,000억원

○ (미소금융 **신규**) 연 4.3만명·0.13조원 지원

※ [연간 계획] 4.3만명 × 인당 평균 대출금액 300만원 = 1,300억원

2 [금리] 정책상품 금리를 대폭 인하하고, 저금리 미소금융 상품 출시

○ (햇살론 등) 평균 금리수준 '25 15.9% → '26 11.6% 인하

※ 기존 고금리 정책서민금융상품(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통합개편하여 '26년 햇살론 특례보증 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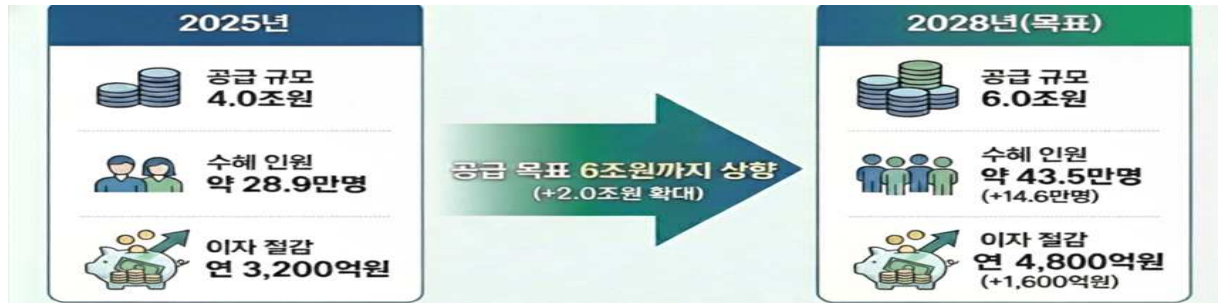
'25년 계획			'26년 계획		
상품명	공급(조원)	금리수준	상품명	공급(조원)	금리수준
햇살론15	1.05	15.9%	햇살론 특례보증	2.33	-
최저신용자특례보증	0.28	15.9%	- 非사배자(85%)	1.98	12.5%
			- 사배자(15%)	0.35	9.9%
불법사금융예방대출	0.2	15.9%	불법사금융예방대출	0.2	-
			- 非사배자(80%)	0.16	12.5%(완제시 6.25%)
			- 사배자(20%)	0.04	9.9%(완제시 4.95%)
합계	1.53	15.9%	합계	2.53	11.6%

- 연간 총 1,081.3억원 이자절감

※ (햇살론 특례보증) 1인당 평균대출액 400만원 → 연간 1인당 13.6만원(사배자 24만원), 총 883.1억원 이자절감  
 ※ (불법사금융예방대출) 1인당 평균대출액 75만원 → 연간 1인당 7.2만원(사배자 8.2만원), 총 198.2억원 이자절감

○ (미소금융 **신규**) 청년, 사회적배려대상자, 불사금 대출 완제자 등 금융소외자에 대해 3~6% 낮은 금리의 대출상품 제공 (본문 7p)

## (2) 민간서민금융(새희망홀씨)



※ ['28년 계획] 43.5만명 × '24년 건당 평균 대출금액 1,380만원 = 6.0조원  
 [이자절감액] 공급목표액 × 금리절감폭(8.0%p\*)

\*은행권(새희망홀씨, 약 7~8%) vs 비은행권(저축·캐피탈 등, 약 15~16%) 이용시 약 8%p 금리 차이가 발생한다고 가정

## 2. 신속한 재기 지원

### (1) 취약계층 채무조정 확대

- ① (새도약기금) 수혜인원은 113.4만명, 총 매입 채권규모는 16.4조원 예상
- ② (새출발기금) 수혜인원은 10.1만명, 총 채권규모는 6.2조원 수준 예상

### (2) 연체관리 개선 및 신용회복 지원

- ① (매입채권추심업) 관리감독 수준이 낮은 금융권으로 추심업무가 이전됨에 따른 과잉추심 방지 등 채무자 보호 효과
- ② (금융권 개인연체채권) 채무자의 신속한 경제활동 재기 지원 및 장기 연체자 양산 방지
- ③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경쟁적인 추심 방지, 다중채무자 채무조정 실효성 제고 및 변제 의욕 고취 등 부실채권 정리 효과성 제고
- ④ (신용회복 지원) 개인 295만(NICE), 개인사업자 75만(KODATA) 등 최대 370만명이 신용접수 상승 등 수혜 기대

※ [개인] 신용평점 평균 40점 상승(616→656점), 약 29만명은 신규 카드발급, 약 23만명은 은행권 신규대출 가능  
 [개인사업자] 신용평점은 평균 31점 상승(696→727점)하여, 약 2만명이 은행권 신규대출 가능할 것으로 예상

## 3. 금융안전망 강화

- (불법사금융 차단) 불법사금융의 구조적 유인 차단을 통한 금융 배제계층의 제도권 복귀와 사회·경제 안정 촉진

## VII. 추진계획

세부 과제	일정	조치사항
<b>① 금융비용 접근성 제고와 금융비용 부담 완화</b>		
〈정부가 마중물이 되어 서민의 금융부담 경감〉		
1. 정책서민금융상품 금리 인하	기시행	-
2. 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 및 금융권 서민금융 출연료 인상	'26년중	법 개정 등
3. 금융권 기부금을 활용한 금융소외계층 지원 강화	'26.1분기	방안 발표
〈민간 금융권의 포용금융 역할 제고〉		
1. 은행권 중저신용자 자금공급 확대	'26.1분기	공급계획 발표
2. 중금리 대출 체계의 양적·질적 개선	'26.1분기	고시 개정 등
3. 금융권의 자율적 포용금융노력 확산 유도	지속	-
〈민관 협력을 통한 성실상환자 금융사다리 제도화〉		
1. 크레딧 빌드업 체계를 통한 정책서민금융 졸업 유도	'26.1분기	방안 발표
2. 신용평가 고도화를 통한 '숨은 신용점수' 발굴 및 제도권 연계	'26.4분기	신용상장계약 도입
<b>② 신속한 재기지원</b>		
〈취약계층 채무조정 확대〉		
1. 새도약기금 설치·운영	기시행	-
2. 새출발기금 제도개선	기시행	-
3. 신복위 청산형 채무조정 확대	'26.1분기	신복위 협약 개정
4.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채무조정 내실화	'26.1분기	방안 발표
〈연체관리 개선 및 신용회복 지원〉		
1. 매입채권추심업 제도개선	'26.下	방안 발표
2. 금융권 개인연체채권 관리 제도·행태 개선	'26.1분기	방안 발표
3.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개선	'26.下	내규 개정 등
4. 연체 후 성실상환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기조치	-
<b>③ 금융안전망 강화</b>		
〈불법사금융 신속 차단 및 범죄 유인 억제〉		
1. 원스톱 종합 전담 지원체계 구축	기발표	-
2. 불법추심 초동대응 강화 및 불법추심수단 차단	기발표	-
3. 대부업 및 렌탈채권 매입추심업 감독 강화	기발표	-